

民法中改正法律案(3건)에 대한 의견서(안)

(정부제출·이경숙의원 등 156인·노회찬의원 등 10인)

우리 위원회는 귀 위원회에 계류중인 3건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의
관련위원회로서 호주제도의 폐지 및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첫째,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호주제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전문의 민
주적 기본질서, 제10조의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위
배되는 위헌적인 측면이 있으며,

오늘날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교육수준의 제고 등으로 전통적
역할의 상호 분담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호주제도는 처의 부가입적
(夫家入籍)을 통하여 아내를 차별하고, 자녀의 부가입적(父家入籍)과 부
성(父姓)을 강제하여 어머니를 차별하고, 혼인의 자의 입적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며, 자녀의 고통을 초래케 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신분공시제도로서의 기준이 되는 호주제를 전면폐지하고 있으나,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동 개정안이 공포후 2년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 유예기간 내에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가족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안의 가족개념에 의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장인·장모이더라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등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가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규정짓게 되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는바,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

셋째,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에 있어서 부성(父姓)원칙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있어서 부성원칙이 유지될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부성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나, 남계혈연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관습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부성강제조항을 부성원칙으로 완화하고,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음.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재혼하는 가정이 늘면서 계부와 자녀의 성씨가 달라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넷째,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809조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1997. 7. 16. 95헌가6내지 13 병합)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그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조항으로서 동 규정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시급한 것으로 보임.

또한, 근친혼금지제도와 관련하여 3개의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를 금혼대상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법원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혈족의 범위를 금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섯째,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에 대하여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한 것은 부성(父姓)추정을 위한 것으로서 부성강제규정과 더불어 남계혈족을 강조

하는 규정으로서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부성강제조항의 완화와 함께 재혼금지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소송법 제29조에 의하면 친자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감식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DNA 감정기법의 발달로 친자관계 판별의 정확성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별도로 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임.

여섯째, 친생부인의 소(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친생부인의 소(訴)의 제소기간으로 절대적 제척기간을 두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하도록 한 민법 제847조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에서 현행 민법 제847조가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夫)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부(夫)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대적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확대하

는 경우 자(子)의 신분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바,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라는 상대적 제소기간과 함께 ‘그 자(子)가 출생한 날부터 5년 내’라는 절대적인 제소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친생자를 부인하는 소(訴)의 원고적격을 현행 부(夫)에서 처(妻)에게까지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訴) 제기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고,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이념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처(妻)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여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입양아의 경우에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양자는 양자로 된 후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을 그대로 따르며, 단지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만 양친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을 뿐임.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을

하더라도 여전히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한편,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어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안정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이러한 현재의 입양현실을 감안할 때, 각국의 완전양자제도를 참고하여 현행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친양자의 입양요건(안 제908조의2)중 혼인지속기간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친양자로 결정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부부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5년의 혼인지속기간이 필요(정부안·이경숙의원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부부중 일방이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혼인지속기간이 없다는 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었음.

또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안 제908조의2)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혼인관계를 계속한 후 이혼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경숙 의원안)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친양자로 될 자(子)가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친양자로 될 자가 일정한 연령(예 : 15세 이상인 경우)에 도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분 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음.